소통하는 의정 공개받는 의회

제391회 정례회 '21. 6. 9.(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1년 5월 31일○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3. 제안사유

○ 「청년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청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여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지원 근거 마련

4. 주요내용

- O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 근거 추가(안 제1조)
-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변경(안 제3조)
- O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 O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 등에 포상 근거 신설(안 제21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주회)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정(시행 2020. 8. 5.)에 따라 청년의 연령 범위 조정, 청년위원회의 명칭 변경,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개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일부 내용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인 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행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함.
- 이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한 것에 따라,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선을 현행 15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한 것임.
- 현행 「민법」상 성년의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15세부터 19세까지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연령 범위에 속하는 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연령 범위의 하한선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음.
- 다만, 조례에서 청년 연령 범위 상한선을 39세로 유지함. 이는 현재 충북의 청년대상 조직 및 사업(청년희망센터, 청년 광장 운영 등)이 39 세까지를 대상으로 조직 및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따른 34세로 하향 조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17개 광역 시·도 중 충북을 포함한 12개 지역이 상한 연령을 39세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따라 34세로 규정한 곳은 5곳에 그치고 있음.

〈17개 광역시·도 조례에 규정된 청년 연령범위('21. 6. 7. 기준)〉

청년 연령 상한선	해당 시ㆍ도
39세(12개소)	충북,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34세(5개소)	부산, 울산, 세종, 경기, 경남

- 물론,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후단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연령 범위 갭으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에서 자칫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청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u>다만, 다른 법령과</u>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안 제6조, 제7조, 제9조는 「청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현행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명칭을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청년 기본법

-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안 제9조 제5항은 현행 "~ 위촉직 위원은 ~ 청년을 5명 이상 포함"을 "~ 위촉직 위원은 ~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으로 개정한 것으로, 도 내 청년의 위원으로서 도 정책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안 9조제7항에서는 위원의 임기 연임 기한과 관련해, 현행 조례에서는 별도의 연임기한을 두지 않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연임 기한에 제한을 두어 많은 도민(청년 포함)이 위원회를 통

한 정책 참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타당함.

○ **안 제21조**는 청년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한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제정·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범위 조정,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다수의 도 내 청년이 위원으로서 청년정 책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 며, 청년정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 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